취약계층 청년의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안 (조은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5452

발의연월일: 2024. 11. 11.

발 의 자: 조은희 · 신성범 · 이성권

이인선 • 우재준 • 박정하

주진우 · 김용태 · 윤상현

서천호 의원(10인)

제안이유

보건복지부가 2022년에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, 가족돌봄청년은 약 10만 명, 고립·은둔청년은 약 54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며, 국회입법조사처의 2023년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경계선지능청년은 약 9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등 다양한 유형의 취약계층 청년이 증가하면서 이들이 직면한 어려움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. 이들상당수가 과도한 돌봄 부담이나 사회적 고립 등으로 우울감을 겪고 있고, 일반 청년에 비해 사회 진출과 자립에 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국가 차원의 체계적 지원이 시급함.

그러나 현행 「청년기본법」은 취약계층 청년 지원을 위한 선언적 규정만 두고 있을 뿐, 이들의 자립을 뒷받침할 구체적 지원 수단과 추 진 체계가 미흡함.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개별적 지원사업 역시 연계 성이 부족하여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으며, 범부처 차워의 통합적 정 책을 추진하기 위한 컨트롤타워가 부재하여 지원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움.

이에 「취약계층 청년의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」을 제정하여, 그간 정책적 관심에서 소외되어 온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.

주요내용

- 가. 이 법은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취약계층 청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함(안 제1조).
- 나. 보건복지부장관은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심층적인 실태조사를 실 시하고,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함(안 제8조).
- 다.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을 위해 필요한 취업 지원을 실시할 수 있음(안 제14조).
- 라.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 청년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주 거지원, 금융생활지원을 실시할 수 있음(안 제15조 및 제17조).
- 마. 보건복지부장관은 관련 기관·단체를 취약계층청년자립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취약계층 청년 실태조사, 연구,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등 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음(안 제20조 및 제21조).
- 바. 위기청소년 전담기관의 장 등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약계층 청년 을 발견한 경우에는 취약계층 청년 자립지원 제도를 안내하고 지원

센터에 연계하여야 함(안 제23조.)

사. 보건복지부장관은 취약계층 청년에게 자립지원에 관한 상담과 정보를 종합적·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취약계층 청년 종합정보전화센터(이하 "전화센터"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음(안 제24조).

취약계층 청년의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안

- 제1조(목적) 이 법은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취약계층 청년이 건실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"취약계층 청년"이란 「청년기본법」 제3조제5호에 따른 취약계층 청년을 말한다.
- 제3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 층 청년의 자립지원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 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 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행정적·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 다.
- 제4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취약계층 청년 지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청년기본법」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 에 따른다.
- 제5조(협력체계 구축) 보건복지부장관은 취약계층 청년 자립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기관·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- 제6조(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취약계층 청년 자립지원에 관한 기본계획(이하 "기본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 ·시행하여야 한다.
 -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와 협의하여야 한다.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 -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- 1. 취약계층 청년 자립지원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
 - 2. 취약계층 청년 자립지원에 관한 사업의 개발·운영 방안
 - 3. 취약계층 청년 자립지원에 관한 전달체계 구축
 - 4. 취약계층 청년 자립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
 - 5. 취약계층 청년 자립지원에 관한 조사 연구
 - 6. 취약계층 청년 자립지원 관련 제도개선 방안
 - 7. 취약계층 청년 자립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
 - 8. 제19조에 따른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방안
 - 9. 기본계획 시행을 위한 관계 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·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
 - 10. 그 밖에 취약계층 청년 자립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 -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「청년기본법」 제8조의 청년정책 기본계획에

부합하도록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.

- ⑤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7조(시행계획의 수립 등) ① 보건복지부장관,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·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취약계층 청년 자립지원에 관한 시행계획(이하 "시행계획"이라 한다)을 매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 -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·도지사는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,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 하여야 한다.
 - ③ 보건복지부장관,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·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 - ④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8조(실태조사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취약계층 청년 자립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취약계층 청년의 경제활동, 주거, 건강, 교육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 를 공표하여야 한다.
 -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

- 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및 그 밖의 관련 기관·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
-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업무를 제20조에 따른 중앙취약계층청년자립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.
-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·내용·방법 및 결과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- 제9조(지원대상자) ① 이 법에 따른 지원은 취약계층 청년으로서 그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, 재산, 취업 여부, 주거 여건, 가구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청년(이하 "지 원대상자"라 한다)에 대하여 실시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 실태 및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자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.
- 제10조(지원신청) ①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취약계층 청년은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에게 신청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신청할 때 취약계층 청년과 그 가구원(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8호에 따른 개별가구의 가구원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.

- 1. 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(이하 "금융정보"라 한다)
- 2.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(이하 "신용정보"라 한다)
- 3. 「보험업법」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(이하 "보 험정보"라 한다)
-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한다.
- 제11조(지원대상자 선정) ①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 10조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대상자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.
 - ②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여부를 결정할 때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·정보의전부 또는 일부를 통해 평가한 취약계층 청년과 그 가구원의 소득·재산 수준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관련 조사의 일부를 생략하고 지원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다.
 - ③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30일 이내에 지원대상자

선정 여부를 결정하고,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즉시 알려주어야 한다.

- 제12조(금융정보 등의 제공) ①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0조의 신청에 따라 신청자를 지원대상자로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4조와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2항에 따라 취약계층 청년과 그 가구원이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형태로 바꾼 문서로 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나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(이하 "금융기관등"이라 한다)의 장에게 취약계층 청년과 그 가구원의 금융정보·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(이하 "금융정보등"이라 한다)의 제공을 요청할수 있다.
 - ②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원 대상자의 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4조와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적 사항을 기재한 문서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로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취약계층 청년과 그 가구원의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
 -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

- 등의 장은 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4조와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명 의인의 금융정보등을 제공하여야 한다.
- ④ 제3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을 제공한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정보등의 제공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다만, 명의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4조의2제1항과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35조에도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.
-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은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 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한다. 다만, 정보통신망이 손상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금융정보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3조(지원제공기관 연계) ①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선정된 지원대상자에게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제공하는 기관(이하 "지원제공기관"이라 한다)을 연계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지원제공기

관과의 연계는 제21조에 따른 취약계층청년자립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.

- ②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지원대상자와 지원제공기 관을 연계할 때에는 지원대상자에게 지원 방법, 비용부담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.
- ③ 제2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는 관련 정보의 제공 방법 및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- 제14조(취업지원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 청년이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직업적성 검사, 진로 상담 프로그램, 직업체험 및 훈련 프로그램, 취업알선 및 관리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·방법·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5조(주거지원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 청년의 안정적 인 주거생활을 위하여 임대주택 공급, 임대료 지원, 주거환경 개선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·방법·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6조(의료 및 건강관리 지원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 청년의 신체적·정신적 건강을 위하여 영양·건강에 대한 교육, 의 료비 지원, 건강검진 및 정신건강검사와 진료(심리치료 및 상담을

포함한다)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
-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·방법·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7조(금융생활지원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금융 관련 상담 및 교육, 자산의 형성 및 관리, 채무조정 제도 안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·방법·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8조(문화활동지원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 청년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 활동 참여를 장려하기 위하여 문화예술행사 개최, 국·공립 문화시설 이용료 할인,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시설 확충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·방법·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9조(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원대상 자로 선정된 취약계층 청년의 유형별 특성에 적합한 지원을 제공하 기 위하여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에 따른 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 하는 통합서비스(이하 "맞춤형 통합서비스"라 한다)를 실시할 수 있 다.
 -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맞춤형 통합서비스 사업의 운영지원에 관한 업무를 제20조에 따른 중앙취약계층청년자립지원센터에 위탁할 수

있다.

- ③ 제1항에 따른 맞춤형 통합서비스의 제공 방법・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20조(중앙취약계층청년자립지원센터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취약계층청년자립지원센터(이하 "중앙지원센터"라 한다)를 지정·운영할 수 있다.
 - 1. 취약계층 청년 자립지원 프로그램의 개발·보급 및 홍보
 - 2. 취약계층 청년 자립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·단체와의 전국단위 네트워크 구축·운영
 - 3. 제21조에 따른 취약계층청년자립지원센터에 대한 평가 및 컨설팅
 - 4. 제21조에 따른 취약계층청년자립지원센터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및 근로환경 조사
 - 5. 그 밖에 취약계층 청년 자립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
 -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지원센터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 -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에 필요한 인력·시설·장비 등의 기준, 지정 신청 및 지정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21조(취약계층청년자립지원센터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 치도 또는 시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) 단위의 취약계층청년자립지 원센터(이하 "지원센터"라 한다)를 지정·운영할 수 있다.

- 1. 취약계층 청년 상담 및 정보제공
- 2. 취약계층 청년과 지원제공기관 간 연계
- 3. 취약계층 청년 자조모임 운영 지원
- 4. 취약계층 청년 자립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·단체와의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·운영
- 5. 취약계층 청년 자립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협력
- 6. 그 밖에 취약계층 청년 자립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
-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원센터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-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에 필요한 인력·시설·장비 등의 기준, 지정 신청 및 지정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22조(지정 취소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지원센터 또는 지원센터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
 -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
 - 2.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
 - 3. 제20조제3항 및 제21조제3항에 따른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
 - 4. 그 밖에 중앙지원센터 또는 지원센터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
 -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청문을

하여야 한다.

- ③ 그 밖에 지정취소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23조(지원센터 연계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약계층 청년을 발견한 경우에는 취약계층 청년 자립지원 제도를 안내하고 지원센터에 연계하여야 한다.
 - 1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 각 호의 학교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의 장
 - 2.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 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의 장
 - 3. 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장
 - 4. 「의료법」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
 - 5. 「청년기본법」 제24조의4제1항에 따른 지역별 청년지원센터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중앙청년지원센터의 장
 - 6. 그 밖에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약계층 청년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하는 사람
 - ② 제1항에 따른 취약계층 청년 자립지원 제도의 안내 및 지원센터에의 연계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- 제24조(취약계층 청년 종합정보 전화센터의 설치·운영 등) ① 보건복 지부장관은 취약계층 청년에게 자립지원에 관한 상담과 정보를 종

- 합적·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취약계층 청년 종합정보 전화센터(이하 "전화센터"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-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전화센터의 설치·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-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전화센터의 설치·운영을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- ④ 그 밖에 전화센터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한다.
- 제25조(비밀 유지의 의무) 취약계층 청년 자립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제26조(취약계층 청년의 개인정보보호) 취약계층 청년 자립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취약계층 청년과 그 가구원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제27조(동일 명칭의 사용 금지 등) ① 이 법에 따른 중앙지원센터 또는 지원센터가 아니면 중앙취약계층청년자립지원센터 또는 취약계층청년자립지원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.

- ② 중앙지원센터 또는 지원센터가 아니면 중앙지원센터 또는 지원센터로 지정받은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제28조(권한의 위임과 위탁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
 - ②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 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- 제29조(벌칙) ① 제12조제6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사용·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 -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 - 1. 제25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 적 외에 이용한 자
- 2. 제26조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자 제30조(과태료) ① 제27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를 부과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

지부장관이 부과 • 징수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